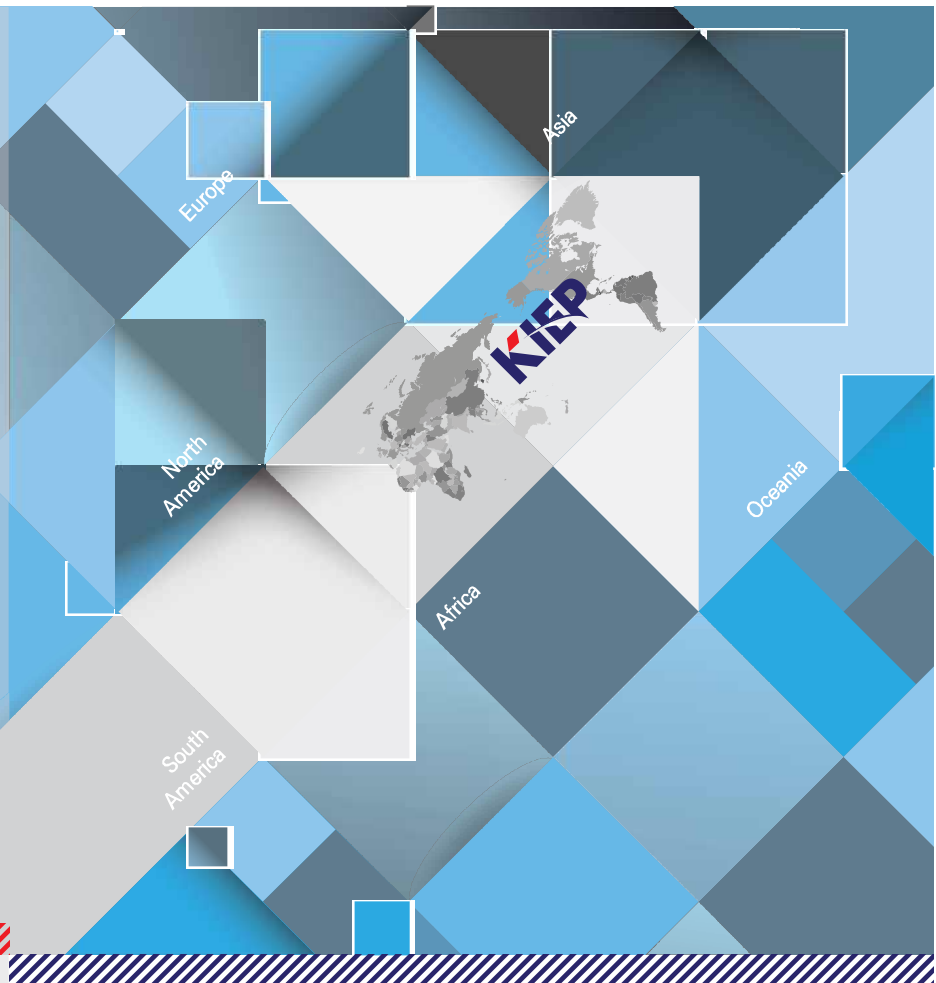




KIEP 기초자료
18-32

2018년 12월 28일



기후변화 대응 다자기금 현황: GCF(녹색기후기금)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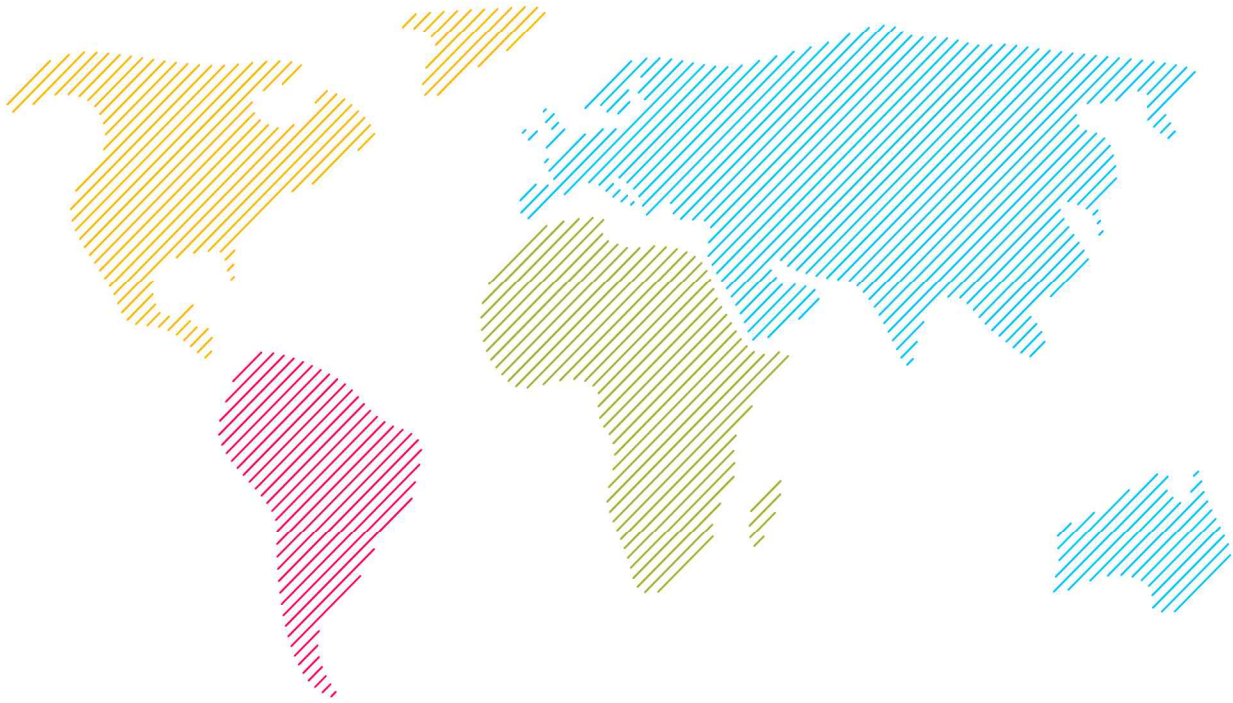
송지혜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jhsong@kiep.go.kr, Tel: 044-414-1074)

오혜경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개발협력팀 연구원
(hkoh@kiep.go.kr, Tel: 044-414-1217)

기후변화 대응 다자기금 현황: GCF(녹색기후기금)를 중심으로

요약

- ▶ [배경] 기후변화 대응 자원마련을 위한 다자기금의 촉매제 역할이 최근 강조되고 있으며, 국제 기후변화 대응 공공재원의 상당부분이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해 제공될 예정
 - 다양한 국제 기후기금 현황과 이들의 접근방식을 비교분석하고 GCF의 직접접근 추진 현황·직접 접근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GCF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 [기후기금]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복원력 제고, 산림활동 등을 위해 국제 기후기금으로 예치된 재원은 약 235억 달러를 나타내며, 기후투자기금(CIF)과 녹색기후기금(GCF), 지구환경 금융(GEF) 순임.
 - [CIF] 감축과 적응, 산림을 지원하는 네 개의 기금으로 세분화되며(총 규모 68억 2,400만 달러) 증여뿐만 아니라 차관, 보증 등 다양한 금융도구를 혼합하여 민간의 참여 추구
 - [GCF] 2013년 송도에 사무국을 개소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직접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 범분야 활동 지원(64억 1,260만 달러)
 - [GEF]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전지구적 환경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으로 4년마다 재원이 보충되며, 점차 환경이슈에 대한 통합접근법으로 전환 중임.
 - [AF] 개도국과 기후변화 취약국의 프로젝트·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공여국의 기여금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금을 재원으로 활용
- ▶ [접근방안] CIF 등 기존 기금은 다자기금을 사업 이행기구로 설정하였으나 최근 AF와 GCF 등 일반 사업기구(민간, 개도국, 선진국 기구 등)를 이행기구로 설정하는 직접접근 방안이 활성화 되는 추이
- ▶ [GCF 직접접근 현황] GCF의 직접접근 방식은 허용사업 규모와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개도국 이행기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지만, 아직까지 직접접근 이행기구의 사업 참여는 저조한 상태
 - GCF 이사회와 사무국은 다양한 방식(사업준비금융, 레디니스지원, 승인간소화시범사업)으로 직접접근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나 직접접근 사례는 약 25%(사업 건수 기준)에 불과
- ▶ [시사점] 다수의 직접접근 기구가 제도적·인적·재정적 역량 미흡으로 사업을 개발·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 데에 향후 지원을 집중할 필요
 - [사무국] 최근 개발하여 추진해온 직접접근 활성화 방안(사업준비금융, 레디니스지원, 승인간소화시범사업 등)을 보다 확대하고 개발할 필요
 - [우리나라]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양차지원 경험을 활용하여 직접접근 이행기구의 사업개발 역량지원을 심화하고, GCF 관련 세미나·포럼 등을 계기로 직접접근 이행기구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



차 례

1. 배경

2. 국제 기후기금 분석

- 가. 국제 기후기금 현황
- 나. 기금별 접근방안

3. GCF 직접접근 방식

- 가. GCF의 직접접근 의의
- 나. 직접접근 추진 현황
- 다. 직접접근 활성화 방안
- 라. 시사점

참고문헌

1. 배경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원마련은 국제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며, 기후재원 조성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보다 많은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양자·다자 공공 기후기금의 촉매제 역할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2015년 당사국총회(UNFCCC 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전 세계 국가가 각기 설정한 자발적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따라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감축, 적응, 이행지원 등)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음.
- 더불어 파리협정 9조(재원 관련) 1항과 2항은, 선진국(Dveloped Country Parties)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재원을 제공하며 기타 국가들(other Parties) 또한 자발적으로 재원을 공여할 수 있다는 내용 포함
- 이에 앞서 2010년 당사국총회(COP16)에서 채택된 칸쿤합의문(Cancun Agreement)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자·양자·민간채널을 통해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의 장기재원(Longterm Finance)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다룸.¹⁾

■ UNFCCC와 UN 기구,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은 다양한 기후기금을 조성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을 지원하며, 다양한 지원도구(보증, 보험, 협조금융 등)와 시범사업을 시도하여 민간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체로부터 보다 많은 재원을 유인하고자(leverage) 함(그림 1 참고).

- 그밖에도 다자기금은 양자재원에 비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분절화가 적은 동시에 환경과 같은 글로벌 공공재 제 공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을 가짐.²⁾

■ UN기후변화협약의 16차 당사국총회(COP16, 멕시코 칸쿤)에서 설립이 결정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은 UNFCCC의 재정체계 운영주체(operating entity of the financial mechanism)로 국제 공공 기후재원의 운영을 담당함.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각 당사국들이 제공하는 기후재원의 상당부분이 재정 운영주체인 GCF를 통해 개도국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되며³⁾ 따라서 GCF는 국제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
- GCF는 2013년 12월 5일,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출범하여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21차 정기이사회(2018. 10)까지 총 96개의 사업이 승인됨.

■ 기후기금은 다자개발은행의 절차와 방식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적응기금(Adaptation Fund), GCF 등의 기

1) UNFCCC(2016), Cancun Agreement. Decision 1/CP. 16, para. 9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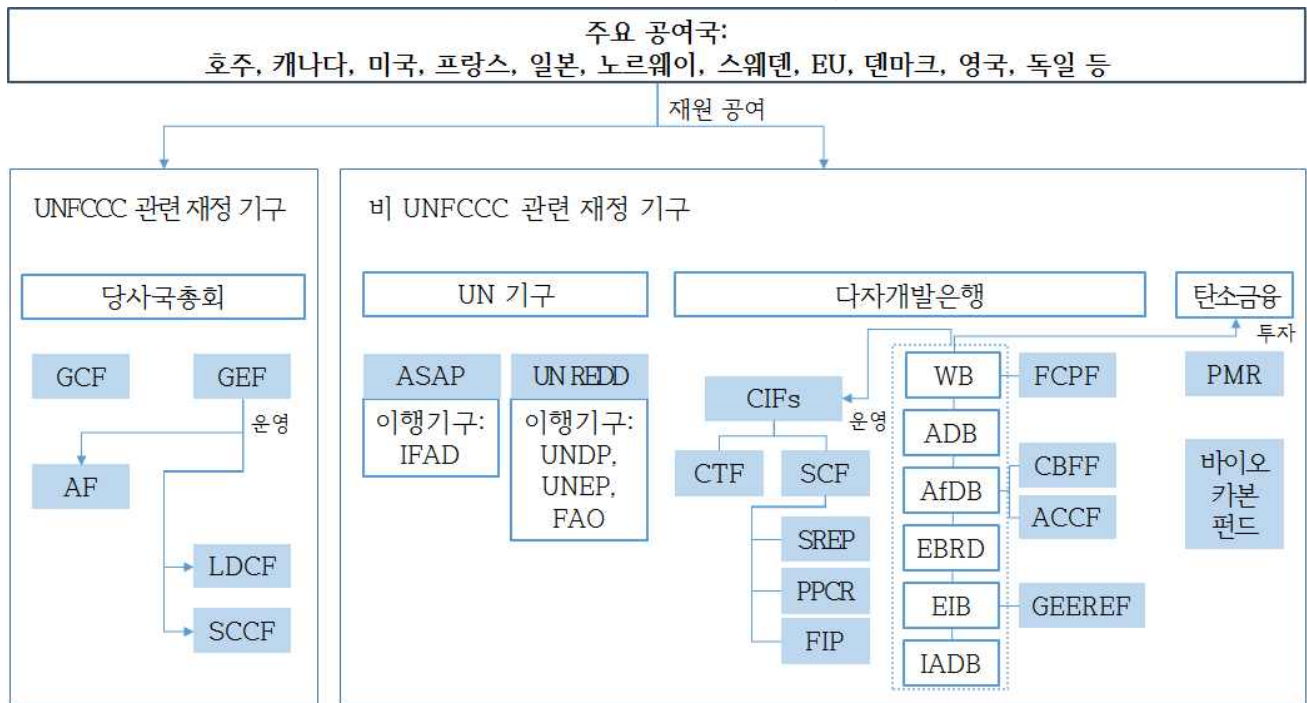
2) Gulrajani(2016), Bilateral versus multilateral aid channels: Strategic choices for donors, p. 13.

3) 칸쿤합의문(2016)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다자지원의 상당부분을 GCF를 통해 제공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UNFCCC 2010, Decision 1/CP. 16, para. 100).

후기금은 수원국 사업 이행주체가 직접 기금을 사용하는, 이른바 ‘직접접근(direct access)’ 방식을 허용하고 있음.

- 직접접근이란 사업 이행기구가 세계은행 등 다자기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금에 사업을 신청하는 방안을 의미하며, 수원국 주인의식 제고, 수원국 기관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역량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림 1. 주요 기구별 국제 기후기금 운영 구조



주: 사용된 약어는 다음과 같음(알파벳순).

ACCF – African Climate Change Fund, ADB – Asian Development Bank, AF – Adaptation Fund,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ASAP – Adaptation for Smallholder Agriculture Programme, CBFF – Congo Basin Forest Fund, CIFs – Climate Investment Funds, CTF – Clean Technology Fund, EBRD –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IB – European Investment Bank, EU – European Union, FA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 FCPF –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FIP – Forest Investment Program, GCF – Green Climate Fund, GEEREF – Global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Fund, GEF – Global Environment Facility, IADB – Inter American Development Bank, IFAD –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LDCF –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PMR – 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 PPCR – Pilot Program on Climate Resilience, SCF – Strategic Climate Fund, SCCF – Special Climate Change Fund, SREP – Scaling Up Renewable Energy Program, UN REDD – UN Programme on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UNDP – UN Development Programme, UNEP – UN Environment Programme, 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B – World Bank.

자료: Amerasinghe *et al.*(2016), The Future of the Funds: Exploring the Architecture of Multilateral Climate Finance, pp. 14-15를 활용하여 저자 재구성.

■ 본고는 기후변화 대응 자원조성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국제 기후기금의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의 접근 방식과 대비, GCF의 직접접근 활용 현황과 특징을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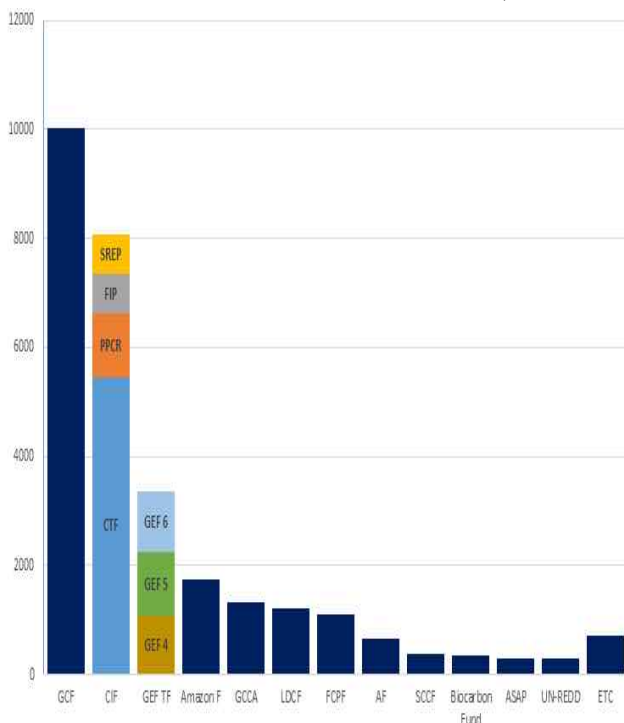
- 출범 5주년을 맞은 GCF가 직접접근 추진 과정에서 마주한 도전과제와 주요 교훈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GCF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기여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국제 기후기금 분석

가. 국제 기후기금 현황

그림 2. 주요 기후기금 규모 비교(약정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주: 기타 기금에는 Global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Fund(GEERED), Congo Basin Forest Fund(CBFF), 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 MDG Achievement Fund, Indonesia Climate Change Trust Fund(ICCTF)가 포함됨.

자료: <https://climatefundsupdate.org/data-dashboard/> (검색일: 2018. 10. 26) 토대로 저자 작성.

표 1. 주요 기후기금 운영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규모				
	약정 (pledged)	예치 (deposited)	예치율 (%)	승인 (approved)	집행 (disbursed)
GCF	10,009.7	6,412.6	64.1	2,638.0	131.0
CIF	8,061.1	6,824.1	84.7	7,004.8	1,785.1
GEF	3,352.6	3,338.0	99.6	2,547.5	1,660.5
Amazon	1,747.4	1,136.0	65.0	639.6	363.6
GCCA	1,332.9	1,332.9	100.0	456.0	171.9
LDCF	1,220.0	1,200.0	98.4	1,009.5	531.9
FCPF	1,112.0	826.0	74.3	216.7	95.2
AF	649.3	649.3	100.0	460.9	253.4
SCCF	367.8	362.8	98.6	292.8	191.9
BioCarbon	349.8	190.6	54.5	46.0	-
ASAP	307.5	290.1	94.3	322.0	59.8
UN-REDD	290.9	285.1	98.0	289.4	275.2
기타	711.4	665.6	93.6	461.8	141.1
총합계	29,512	23,513	=	16,384	5,661

주: 기타 기금에는 Global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Fund(GEERED), Congo Basin Forest Fund(CBFF), 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 MDG Achievement Fund, Indonesia Climate Change Trust Fund(ICCTF)가 포함됨.

자료: <https://climatefundsupdate.org/data-dashboard/> (검색일: 2018. 10. 26) 토대로 저자 작성.

■ 2003년부터 누적 기준으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복원력 제고, 산림활동 등을 위해 국제 기후기금으로 예치된 (deposited) 재원은 약 235억 달러를 나타내며, 기후투자기금(CIF)과 녹색기후기금(GCF)이 각각 68억과 64억 달러로 가장 큰 규모임.

- 약정액(pledged) 기준 가장 큰 규모(100억 달러)를 나타내는 GCF는 2013년 말 운영이 시작된 신생 기금으로 승인·집행률이 각각 26.4%와 1.3%(약정액 대비)로 아직 매우 낮은 수준임.
- 한편 1992년부터 기후변화와 사막화방지, 생태다양성 등을 지원해온 GEF는 재원보충회의를 통해 회원국의 분담

금 형식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승인율과 집행률 또한 76%와 50% 수준을 나타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개설된 CIF 또한 약정 대비 예치율 84.7%, 승인율 86.9% 수준으로 기금의 예치와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EU가 재원을 제공하는 GCCA(Global Climate Change Alliance) 기금은 총 약정액이 예치되었으나 승인율 및 집행률은 30%와 10%대로 낮은 편임.
- 10억 달러 미만의 상대적으로 작은 기금들(AF, SCCF, ASAP, UN-REDD 등)은 대체적으로 예치율과 집행율이 높은 편임.

■ 실제 공여와 사업승인 규모에서 최대를 나타내는 기후투자기금(CIF: Climate Investment Funds)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네 개의 세부기금으로 구성되며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섯 곳의 지역개발은행이 이행기구(implementing entity)로 참여함.

- CIF는 청정기술기금(CTF: Clean Technology Fund)과 전략기후기금(SCF: Strategic Climate Fund)으로 구성되며, 전략기후기금은 기후복원시범프로그램(PPCR: Pilot Program for Climate Resilience)과 산림투자프로그램(FIP: Forest Investment Program), 재생에너지확대프로그램(SREP: Scaling-Up Renewable Energy Program)으로 세분됨.
- 다수의 기후기금이 주로 증여성 재원을 제공하는 반면, CIF는 증여뿐만 아니라 차관, 보증 등 다양한 금융도구를 혼합하여 활용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유도함.⁴⁾
- 한편 CIF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UNFCCC하에 새로운 재정지원 기구가 자리 잡게 되면 활동을 종료하도록 하는 '일몰조항(sunset clause)'을 가지고 있으며⁵⁾ 2019년 1월 기금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6월 위원회에서 일몰 및 기금의 향후 운영과 관련된 결정이 도출될 예정⁶⁾

■ UNFCCC의 재정 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은 2010년 칸쿤 당사국총회 결정문을 통해 공식 설립되었으며, 2013년부터 운영 개시

- 기금의 운영은 COP17(터반 당사국총회)에서 승인된 운영지침을 따르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등한 참여(선진국 12석, 개도국 12석)를 고려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주요 의결을 담당
- 2016년 11월 기준, 주요 공여국은 미국(29%), 일본(15%), 영국(12%), 프랑스·독일(각 10%) 등이며 우리나라는 1억 달러(1%)를 공여
- 감축과 적응 창구를 각각 가지고 있으며, 범분야 우선순위 지원 분야로 △ 기후 친화적 도시 △ 지속가능한 저탄

4) 공공 대 민간 재원 레버리지 비율은 약 1:7 수준으로 나타남(Barnard and Nakhoda(2014),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Finance: a Review of the Scaling-up Renewable Energy Program," p. 6).

5) 이른바 GCF와 같은 "신규 재정지원 구조가 수립 및 발효될 때 CIF는 활동을 종료(...will take necessary steps to conclude operations once a new financial architecture is effective)"하며, 신탁기금 위원회(Trust Fund Committee)가 종료 시점을 결정함(CIF. 2011a. "Governance Framework for the Clean Technology Fund"; CIF. 2011b. "Governance Framework for the Strategic Climate Fund").

6) CIF(2018), FY19 CIF Business Plan and Budget, para. 100.

소 농업 △산림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원 확대 △ 군소도서국 기후복원력 강화 △ 에너지 생산 활동 및 접근의 변화를 설정함.

- 감축활동 주요분야는 △ 에너지 생산 및 접근 △ 교통 △ 산림 및 토지이용 △ 건물, 도시, 산업, 제품이며, 적응활동은 △보건, 식량, 물 안보 △ 인간거주지 및 사회공동체 △ 생태계 및 생태서비스 △ 인프라 등 구축환경으로 구분
- 민간지원기구(Private Sector Facility)를 별도로 설치하여, 민간의 투자를 통한 총 기후자원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 기후기금 중 가장 긴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구환경금융(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은 1992년 리우 지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환경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됨.

- 세계은행과 UNDP, UNEP의 협력체제로 발족하였으나 2018년 현재 독립기구로 운영되며, 4년 주기로 재원이 보충됨.
-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사막화방지, 화학·폐기물, 산림, 공동해역, 아마존, 수산업, 식량안보 등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GCF와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기후변화 대응만을 지원하는 활동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종합적인 환경이슈에 대응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으로 전환 중임.
- GEF 4기(2006. 7 ~ 2010. 6)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8개의 분야에서 지원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⁷⁾ GEF 5기(2010. 7 ~ 2014. 6)와 GEF 6기(2014. 7 ~ 2018. 6)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집중한 바 있음.⁸⁾
- 한편 GEF는 UNFCCC의 신탁기금인 특별기후변화기금(SCCF)과 최빈개도국기금(LDCF)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특화된 활동을 지원함.

■ 소형 기금 중 대표적인 사례로, 교토의정서(제12조 8항)에 의해 2009년 설립된 적응기금(AF: Adaptation Fund)은 개도국과 기후변화 취약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적응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⁹⁾

- 공여국의 기여금뿐만 아니라 CDM 프로젝트로 발생한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금을 활용함.
- 중점 지원 분야는 △ 농업 △ 해안관리 △ 재해관리 △ 식량안보 △ 산림 △ 다분야 △ 농촌개발 △ 도시개발 △ 수자원 관리의 9개 분야와 밀접한 기후변화 적응활동임.
- 지출 기준으로 수자원 관리, 농업, 식량안보(각 18%), 해안관리, 다분야(각 12%), 농촌개발(11%)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전액 무상원조

7) GEF(2007), Focal Area Strategies and Strategic Programming for GEF-4.

8) GEF(2010), GEF-5 Focal Area Strategies; GEF(2014), GEF-6 Programming Directions.

9) UNFCCC(2001), Funding under the Kyoto Protocol. Decision 10/CP.7(FCCC/CP/2001/13/Add.1).

나. 기금별 접근방안

1) 기존 다자기금

■ 기존 기금들은 다자개발은행이나 UN 기구를 사업 이행기구로 설정하고 해당 기구가 기금에 대한 접근과 사업 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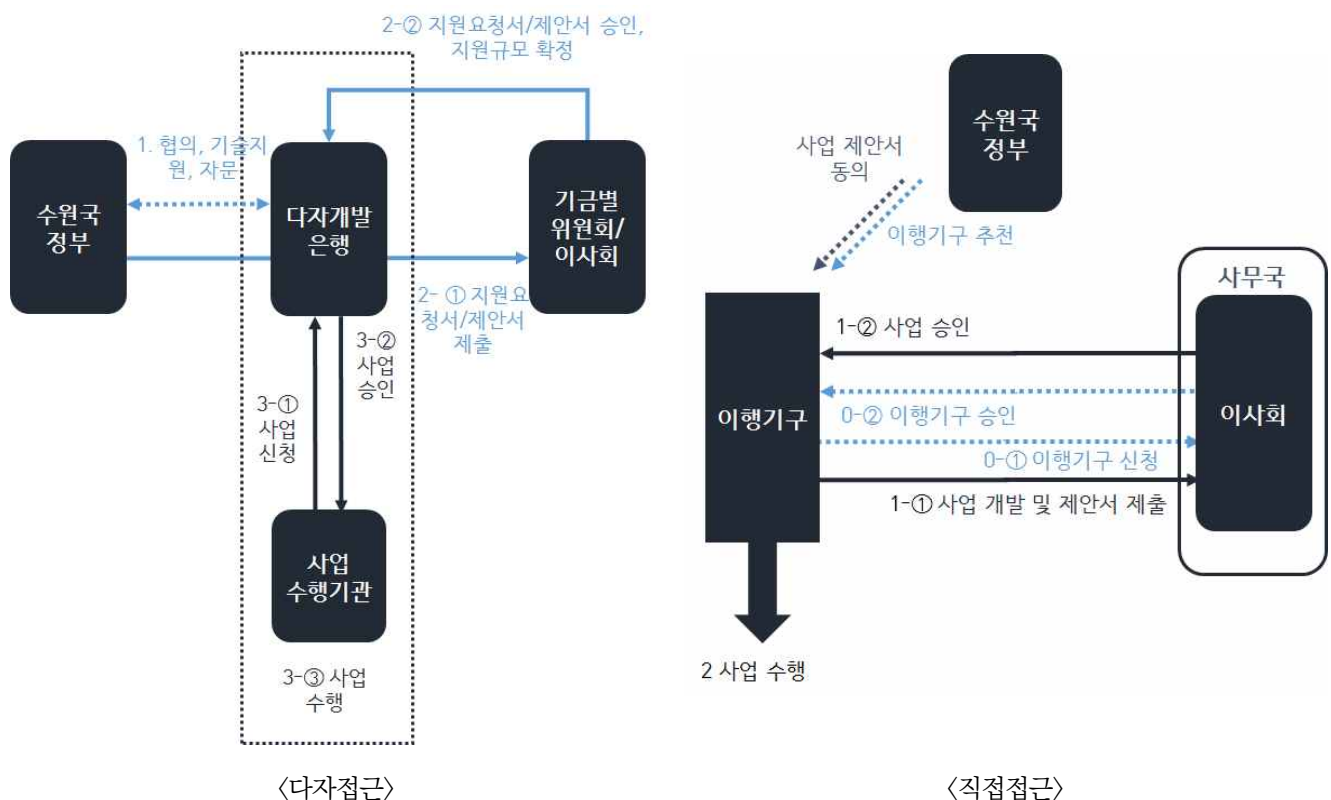
- 따라서 사업 발굴·신청·승인·이행의 모든 과정이 대체로 기금이 설정한 이행기구의 체계와 절차를 따름.

■ 예를 들어 기후투자기금(CIF)은 세계은행과 AfDB, ADB, EBRD, IDB 등 지역개발은행이 이행기구로 활동하며 수원국 정부와 소통하고 사업의 전반을 총괄함.

- 수원국 정부와 이행기구 간 협의에 의해 지원요청서와 투자계획서가 마련되며(1단계), 지원요청서와 투자계획서를 CIF 소위원회가 검토하여 승인하면(2단계) 이행기구가 사업을 발주하여 세부사업이 추진됨(3단계).

- 이와 같은 방식하에서는 사업발굴·계획 등 사업 초기단계에서 수원국 지역사회, 시민단체, 사업이행기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제한적임.

그림 3. 기금별 접근방안



자료: CIF(2009), Design Document for the Program on Scaling-up Renewable Energy, paragraphs 26-29; GCF 홈페이지 (<https://www.greenclimate.fund>, 검색일: 2018. 11. 20) 토대로 저자 작성.

2) 직접접근 기금

■ 사전에 승인된 개도국 기관이 사업 이행기구로서 기금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외 기관을 거치지 않으므로 사업준비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수원국 기관의 사업참여 확대에 효과성 또한 증대할 수 있는 방안임.

- 절대규모는 크지 않으나 적응기금(AF)이 대표적인 직접접근 활용 사례로 언급되며 GEF 또한 제한적인 수준에서 직접접근 방식을 활용함.

■ 기금은 대부분 각 개도국에 ‘지정기구(DA: Designated Authority)’를 설정하고 있으며, 지정기구는 기금과 소통하는 수원국 정부대표로서 자국의 ‘국가이행기구(NIE: National Implementing Entity)’를 추천하는 권한을 가짐.

- 구체적인 선정절차는 지정기구가 이행기구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①) 기금 사무국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독립 승인 패널에 전달(②), 지정기구의 추천을 받은 이행기구는 수탁기준 및 환경·사회기준 충족 근거를 제시하고(③) 기금 이사회는 모든 근거를 종합하여 승인 또는 미승인을 결정함(④).

■ 적응기금은 직접접근을 본격적으로 활용한 최초의 기금이자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며, 적응기금이 승인한 46개 이행기구 중 약 61%에 달하는 28개가 개도국 내 이행기구임.

- 적응기금의 직접접근 활용 사례는 △ 수원국의 주인의식 강화 △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개도국의 기후금융 활용 역량 강화 △ 사업 전반의 투명성 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됨.¹⁰⁾

표 2. 적응기금 이행기구 현황

구분	기관명
국제 (12)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미주개발은행(IADB),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인간주거계획(UN-Habitat),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세계기상기구(WMO)
지역 (6)	카리브개발은행(C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중남미개발은행(CAF), 사하라사헬관측소(OSS), 태평양환경계획사무국(SPREP), 서부아프리카개발은행(BOAD)
국가 (28)	모로코 ADA, 칠레 AGCI, 우루과이 ANII, 니제르 BARGI, 부탄 BTFC, 세네갈 CSE, 앤티가바부다 DoE, 나미비아 DRFN, 도미니카공화국 IDDI, 아르메니아 EPIU, 파나마 Fundaci3n Natura, 코스타리카 Fundecooperacion Para el Desarrollo Sostenible, 멕시코 IMTA, 마이크로네시아 MCT, 에티오피아 MOFEC, 쿡제도 MFEM, 르완다 MINIRENA, 요르단 MOPIC, 인도 NABARD, 베냉 National Environment Fund, 케냐 NEMA, 탄자니아 NEMC, 인도네시아 Kemitraan, 페루 PROFONANPE, 자메이카 Planning Institute of Jamaica, 벨리즈 PACT, 남아공 SANBI, 아르헨티나 Unit for Rural Change - UCAR
총 46개	

자료: Adaptation Fund 홈페이지(<https://www.adaptation-fund.org/apply-funding/implementing-entities/>, 검색일: 2018. 11. 6).
11. 6).

10) Trujillo and Smita(2013),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finance: a review of the Adaptation Fund," ODI Working Paper 373.

- 한편 GEF는 직접접근을 허용하고 있지만 승인된 개도국 이행기구는 3곳에 불과하며, 직접접근으로 수행가능한 활동을 기반환경 구축(enabling activities) 관련 활동, 국가포트폴리오 작성 또는 리우협약(기후변화, 사막화방지, 생물다양성) 보고서 작성으로 한정함.

표 3. GEF 이행기구 현황

구분	기관명
국제 (8)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세계은행(WB), 세계자연기금(WWF-US)
지역 (7)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서부아프리카개발은행(BOAD), 중남미개발은행(CAF), 국제보전협회(CI),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ADB)
국가 (3)	중국 환경부(FECO), 브라질생태기금(FUNBIO), 남아공개발은행(DBSA)
총 1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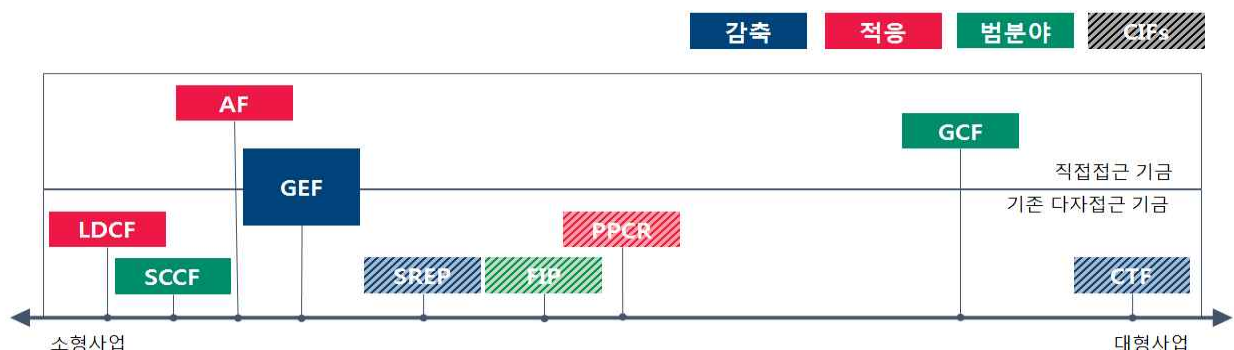
자료: Global Environment Facility 홈페이지, <https://www.thegef.org/partners/gef-agencies/> (검색일: 2018. 11. 6).

3. GCF 직접접근 방식

가. GCF의 직접접근 의의

- 사업 이행주체가 이사회·사무국과 같은 기금 운영주체와 직접 소통하고 사업의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직접접근 방식은 GCF의 설계 초기부터 강조되어 온 특징이며, 그간 타 기금에서 소규모 사업에 한해 직접접근이 허용됐던 것에 반해 자원규모를 크게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적응기금의 직접접근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규모는 작게는 69만 달러에서 최대 140만 달러 수준이며, GCF는 직접접근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규모의 상한선(100만 달러)을 두고 있는 데 반해, GCF의 경우에는 일단 이행기구에 승인된 이후에는 해당기구에 허용된 수행사업 상한선 외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음(그림 4 참고).

그림 4. 기금 분야·규모별 접근방안



자료: Amerasinghe et al.(2016), *The Future of the Funds: Exploring the Architecture of Multilateral Climate Finance*, p. 7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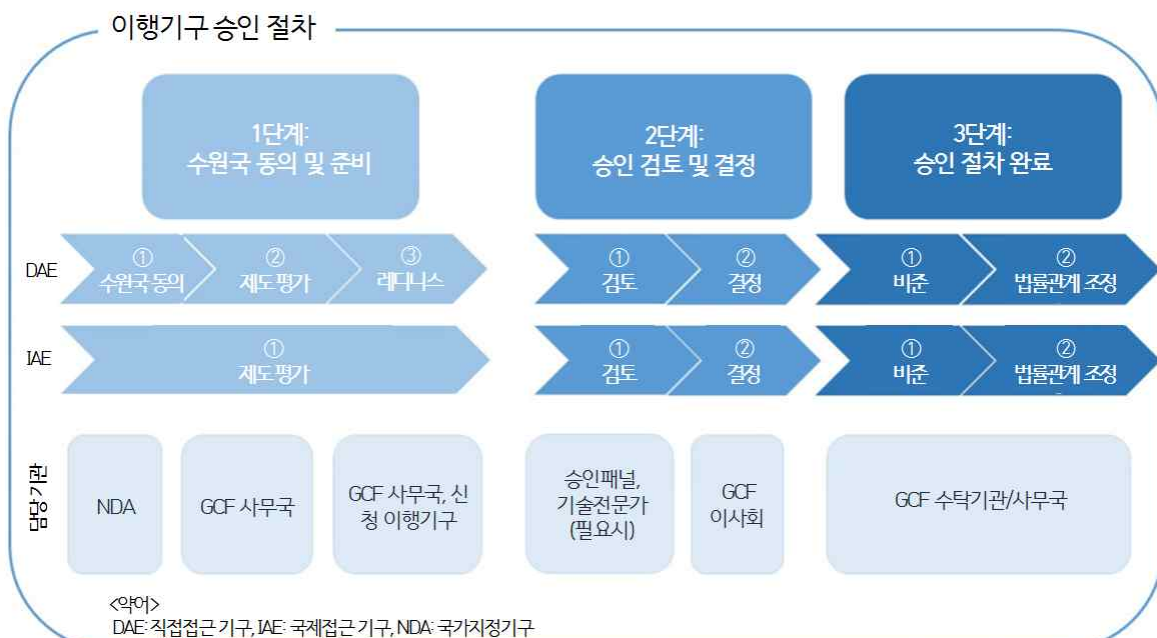
■ GCF 이사회는 이행기구 승인시(글상자 1 참고) 해당 기구에 허용하는 △ 사업의 규모 △ 수탁기준 △ 환경·사회 리스크 수준을 사전에 결정하여 해당 기구의 사업수행 적격성을 구분해둌으로써 향후 사업제안서 검토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 완화 가능

- 사업규모: 초소형(1,000만 달러 미만), 소형(1,000만~5,000만 달러), 중형(5,000만~2억 5,000만 달러), 대형(2억 5,000만 달러 이상)
- 수탁기준: 기본적 요건과 더불어 프로젝트 관리, 참여, 차관, 기타 금융방식(출자, 보증, 복합) 활용가능 여부를 승인 시 평가하여 자격 부여
- 환경·사회리스크 허용: 카테고리 C(영향 미미), 카테고리 B(일부 영향), 카테고리 A(큰 영향)

글상자 1. GCF의 이행기구 승인 절차

■ ‘준비 단계(1단계)’, ‘승인 검토 및 결정(2단계)’, 그리고 ‘최종 승인(3단계)’으로 구성되며, 국가지정기구(NDA) 추천동의서를 필요로 하는 직접접근 기구에 대한 이사회 승인절차는 국제 이행기구 승인방식과 차이가 있음.

- 1단계: 직접접근 기구(DAE: direct access entity)의 경우 ① NDA와 협의를 포함하는 수원국의 동의(nomination letter) ② 제도 평가 ③ 기반환경(readiness) 평가 과정으로 구성; 한편 UN 기구, 세계은행 등의 국제접근 기구(IAE: international access entity)는 제도 평가만을 수행
- 2단계: 승인패널(Accreditation Panel)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신청 기구의 승인 적합성을 검토하고, GCF 이사회는 이를 토대로 승인여부를 결정
- 3단계: 승인이 결정된 이행기구는 GCF와의 법적계약 체결 등 법률관계 조정이 완료된 후 사업 제안 가능
- 더불어 GCF는 중복심사를 방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적응기금, GEF, 또는 EU-DEVCO가 기승인한 이행기구에 한해 속성 승인(fast-track) 허용



자료: GCF Secretariat(2014), Guiding Framework and Procedures for Accrediting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Implementing Entities and Intermediaries, Including the Fund's Fiduciary Principles and Standards and 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 GCF/B.07/02 토대로 저자 작성.

나. 직접접근 추진 현황

1) 이행기구 승인 현황

■ 2015년 3월부터 2018년 10월(21차 이사회)까지 총 75개의 기관이 승인되어 사업을 준비 또는 추진 중이며, 이 중 직접접근을 활용하도록 승인된 개도국의 지역 및 국가기관은 41개(54.6%)임.

- 직접접근 방안을 활용한 기존 기금들이 공공기관만을 이행기구로 승인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GCF는 민간기구를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이해당사자를 이행기구로 승인; 다양한 이행기구의 참여를 촉진하여 기후재원의 확대 도모
- 한국 KDB, 몽골 XacBank 등 상업 금융기관을 직접접근 기구로 승인한 바 있으며, 그밖에도 Credit Agricole, HSBC 등의 금융기관을 국제적 접근 기구로 승인

표 4. GCF 승인 이행기구

구분	기관명
국제 (34)	오스트리아개발기구(ADA), 아프리카금융공사(AFC),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프랑스개발청(AFD), 아시아 개발은행(ADB), BNP 파리바그룹, 국제농업연구컨소시엄(CGIAR), 국제보전협회(CI), 프랑스투자은행(Crédit Agricole CIB), 스페인개발금융(COFIDES),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AG), 독일국제협력기구(GIZ), 유럽 부흥개발은행(EBRD), 유럽투자은행(EIB), 유엔식량농업기구(FAO), HSBC은행(HSBC),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미주개발은행(IDB), 미주투자공사(IDB Investment), 국제금융공사(IFC),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독일개발은행(KfW), 일본MUFG은행(BTMU), 북유럽환경금융공사(NEFCO), 네덜란드개발금융(FMO), 페가수스 CAPITAL ADVISORS(PCA), 프랑스개발금융(PROPARCO),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세계기상기구(WMO), 세계자연기금(WWF)
직접접근	국가 (30)
	모로코 ADA, 모로코 CDG Capital, 세네갈 CSE, 중국 CDM, 브라질 CEF, 안티가바부다 DOE, 나미비아 EIF, 피지 FDB, 중국환경부 FECO, 콜롬비아개발은행 Findeter, 콜롬비아 Fondo Accion, 브라질 Funbio, 방글라데시 IDCOL, 인도 IDFC Bank, 한국 KDB, 필리핀 토지은행, 르완다 MOE*, 쿡제도 MFEM, 에티오피아 MOFEC, 인도 NABARD, 케냐 NEMA, 파키스탄 NRSP, 벨리즈 PACT, 방글라데시 PKSF, 페루 PROFONANPE, 인도네시아 PT MSI, 인도 SIDBI, 남아프리카공화국 SANBI, 아르헨티나 UCAR, 몽골 XacBank
직접접근	지역 (11)
	어큐먼펀드(Acumen), 서부아프리카개발은행(BOAD), 카리브공동체 기후변화센터(CCCCC), 카리브 개발은행(C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중남미개발은행(CAF), 남아프리카개발은행(DBSA), 아비나재단(AVINA), 마이크로네시아 MCT, 사하라사헬관측소(OSS), 태평양환경계획사무국(SPREP)

총 75개

주: 2018년 11월 기준; 르완다 MINIRENA(천연자원부)가 MOE(환경부)로 명칭을 변경함.

자료: GCF 홈페이지 및 GCF(2018), Consideration of accreditation proposal 토대로 저자 작성.

■ GCF 이사회는 승인가구의 다양성과 지역별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우선 승인대상 이행기구 기준을 설정¹¹⁾

- 국가 직접접근 기구, 아태·동유럽 지역 기구, 개도국 민간 기구, GCF의 RFP(Request for Proposal)에 신청하려는 기구, 승인조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기구, 승인활동 업그레이드를 희망하는 기승인 기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 진행하기로 함.¹²⁾

11) 제14차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적용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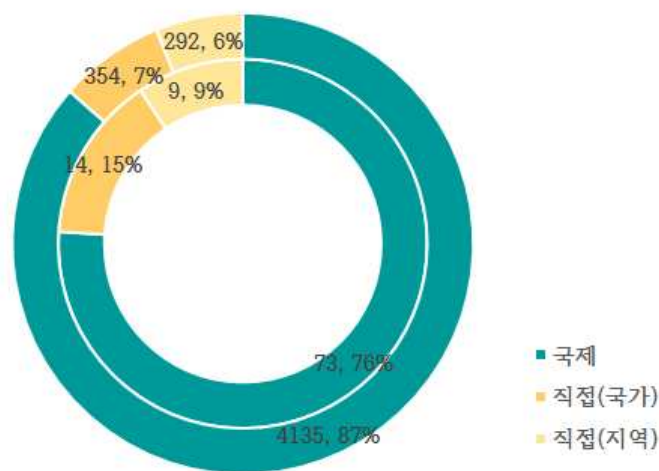
- 우선순위 승인 추진결과, 2016년 대비 2018년 전체 이행기구 중 직접접근 기구 비중이 기존 42%에서 54%로 증가하였음.¹³⁾

2) 직접접근 사업 현황

■ 현재 직접접근 방식을 활용한 사업 규모는 GCF 전체 승인액 기준 13%(5억 5,600만 달러), 승인사업 건 기준 24%(24건)로 아직 낮은 수준임.

- 이사회가 승인한 국가 및 지역 직접접근 기구는 총 41개이나 이 중 사업을 추진 중인 이행기구는 40%에 불과한 15개이며, 26개 기구는 아직까지 사업 준비 또는 파이프라인 단계(사업개발 및 신청)에 있음.¹⁴⁾
- 승인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접접근 기구는 중남미개발은행(CAF), 남아프리카개발은행(DBSA), 아큐먼펀드(2건), 카리브공동체 기후변화센터(CCCCC), 태평양환경계획사무국(SPREP), 중미경제통합은행(1건)과 인도 NABARD, 에티오피아 MOFEC, 몽골 XacBank, 모로코 ADA, 르완다 MOE, 나미비아 EIF, 앤티가바부다 DOE, 세네갈 CSE, 페루 Profonampe임.
- 이 중 40%에 해당하는 6개 기관(CAF, DBSA, 아큐먼펀드, 인도 NABARD, 몽골 XacBank, 나미비아 EIF)은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 중임.

그림 5. GCF 사업승인 현황(접근유형별)



주: 내측 도넛은 사업건수 기준, 외측 도넛은 자원액 합계 기준임.
자료: GCF 홈페이지 토대로 저자 분석.

12) GCF(2016), Decisions of the Board - fourteenth meeting of the Board. 12-14 October 2016(GCF/B.14/17), Decision 8.

13) GCF(2018), Consideration of Accreditation Proposals(GCF/B.20/13), para. 12-13.

14) GCF 21차 이사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파이프라인 진행 중인 직접접근 사업제안서는 27건으로 전체 파이프라인 사업제안서(총 77건)의 26%를 나타냈으며, 2018년 6월 20건에서 소폭 증가함. 사업제안서 개발의 기초가 되는 컨셉노트 또한 전체 192건 중 41건만이 직접접근 기구 작성 내용임(GCF 2018. Status of the GCF Pipeline, including the Status of Project Preparation Facility Requests(GCF/B.21/Inf.11/Rev.01), p. 6.

표 5. 직접적 접근 활용 GCF 사업 현황

사업명	대상국	지원 분야	이행기구	지원규모 (백만 USD)
Building the Resilience of Wetlands in the Province of Datem del Marañón	페루	범분야	Profonampe	6.2
Increasing the Resilience of Ecosystems and Communities through the Restoration of the Productive Bases of Salinized Lands	세네갈	적응	CSE	7.6
KawiSafi Ventures Fund in Eastern Africa	다국가	범분야	Acumen	25
Climate Action and Solar Energy Development Programme in the Tarapaca Region in Chile	칠레	감축	CAF	49
Development of Argan Orchards in Degraded Environments	모로코	범분야	ADA	39.3
Climate Resilient Agriculture in Three of the Vulnerable Extreme Northern Crop Growing Regions (CRAVE)	나미비아	적응	EIF	9.5
Empower to Adapt: Creating Climate Change Resilient Livelihoods through Community-base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in Namibia	나미비아	적응	EIF	10
Business Loan Programme for GHG Emissions Reduction	몽골	감축	XacBank	20
SCF Capital Solutions	남아공	범분야	DBSA	12.2
Climate Information Services for Resilient Development in Vanuatu (Van CIS RDP)	바누아투	적응	SPREP	18.1
Ground Water Recharge and Solar Micro Irrigation to Ensure Food Security and Enhance Resilience in Vulnerable Tribal Areas of Odisha	인도	적응	NABARD	34.4
Renewable Energy Program #1 – Solar	몽골	감축	XacBank	8.7
Implementation Project of the Integral Management Plan of the Lujan River Basin	아르헨티나	적응	CAF	58.6
Responding to the Increasing Risk of Drought: Building Gender-responsive Resilience of the Most Vulnerable Communities	에티오피아	적응	MOFEC	45
Water Sector Resilience Nexus for Sustainability in Barbados (WSRN S-Barbados)	바베이도스	범분야	CCCCC	27.6
Acumen Resilient Agriculture Fund (ARAF)	다국가	적응	Acumen	26
Integrated physical adaptation and community resilience through an enhanced direct access pilot in the public, private, and civil society sectors of three Eastern Caribbea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다국가	적응	DOE	20
Strengthening climate resilience of rural communities in Northern Rwanda (SCRNRP)	르완다	범분야	MINIRENA	32.8
Line of Credit for Solar rooftop segment for Commercial, Industrial and Residential Housing sectors	인도	감축	NABARD	100
Improving rangeland and ecosystem management practices of smallholder farmers under conditions of climate change in Sesfontein, Fransfontein, and Warmquelle areas of the Republic of Namibia	나미비아	적응	EIF	9.3
Energy Efficient Consumption Loan Programme	몽골	감축	XacBank	10
Productive Investment Initiative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CAMBio II)	다국가	적응	CABEI	15.5
DBSA Climate Finance Facility	다국가	범분야	DBSA	55.6

주: 2018년 11월 기준.

자료: GCF 홈페이지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제약요인

■ 이처럼 직접접근 기구의 사업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UNFCCC 당사국총회는 GCF 이사회에 직접접근 이행기구의 사업승인 확대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음.¹⁵⁾

- 이에 따라 GCF 사무국은 그간 승인사업의 검토, 직접접근 이행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¹⁶⁾ 등을 수행하여 직접접근 이행기구의 사업참여 제약요인을 파악함.

■ 승인사업 검토 결과, 사업 규모 및 수탁기준의 제약과 국제기금 활용 경험 부족이 주요 제약요인으로 제시됨.¹⁷⁾

- 다수의 직접접근 기구가 초소형(1,000만 달러 이하) 또는 소형(1,000만~5,000만 달러) 사업만을 추진하도록 승인 되어 있어 추진할 수 있는 활동에 제약이 있음.
- 실제로 직접접근 기구 중 대형(2억 5,000만 달러 이상) 또는 중규모(5,000만~2억 5,000만 달러) 사업이 허용된 기구는 각각 6개와 8개에 불과함.
- 예컨대 상대적으로 큰 자본을 요구하는 에너지접근·발전, 에너지 효율 등과 관련된 사업은 추진이 어려움.
- 대개의 직접접근 기구는 사업관리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승인되었으며, 실제로도 사업관리 외에 프로젝트관리 및 금융방식 활용 역량이 부족함.
- 그밖에도 투자사업의 개발, 구성, 승인 등, 투자사업 관련 역량이 미흡하며, 사업 관리와 이행, 정책, 절차, 기준 등 GCF를 포함하는 국제기금 활용 경험이 부족하여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지정기구 및 직접접근 승인기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GCF 참여 제약요인이 제시됨.¹⁸⁾

- 직접접근 기구의 과반수는 GCF의 운영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언어의 장벽(국제 공용어가 6개인 데 반해 GCF 활동에서는 영어만을 사용)으로 인한 제약, 의사소통 미흡 등을 지적함.
- 협조융자(co-financing), 양허적 지원,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젠더기준 등에 대한 GCF 정책 미흡 또한 우려사항으로 지적됨.
- 특히 패러다임의 전환, 기후변화 사업과 일반 개발사업의 차이점, 경제·재무 분석, 기후요인에 대한 이해, 평가 방법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사무국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그밖에도 제안서 검토 피드백 지연, 다단계로 이루어진 제안서 검토 절차, 승인기준의 비일관성, 용어에 대한 이해도 부족, 빈번한 양식 변경, 언어문제, 정책의 차이 등이 언급됨.

15) UNFCCC(2017),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twenty-second session, held in Marrakech from 7 to 18 November 2016(FCCC/CP/2016/10/Add.1), para. 6.

16) 2018년 4~5월, 총 2회 설문조사 수행.

17) GCF(2017), Facilitating an increase in proposals from direct access entities(GCF/B.16/Inf.08), p. 3.

18) GCF(2018), Strategy to increase funding proposals from direct access entities(GCF/B.20/04).

다. 직접접근 활성화 방안

■ 개도국 직접접근 기구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GCF는 사업실행과 재정관리 역량에 초점을 두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많은 이행기구가 대형사업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으나 대형사업은 주로 다양한 금융수단의 결합과 상당한 환경·사회 영향을 수반하므로, 대부분의 개도국 이행기구는 대형사업 이행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관련 역량을 마련하는 데에는 상당한 지원과 장기간의 경험이 필요함.
- GCF는 사업개발 단계에 재원을 제공하는 사업준비금융(PPF: Project Preparation Facility)과 개도국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레디니스지원프로그램(RPSP: Readiness and Preparatory Support Program)을 추진하여 직접접근 이행기구의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국가별 논의촉진, 워크숍 개최, 지역내 소통 활성화 등의 노력을 추진하여 직접접근 기구의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사업준비금융, PPF] GCF는 본 사업의 일정규모를 선지급하는 방식의 사업준비금융을 활용하여 직접접근기구 및 5,000만 달러 이하(초소형, 소형) 사업의 개발과 품질 향상을 지원함.

- 구체적인 지원 분야는 1) 사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조사, 사업 디자인 2) 환경사회 및 젠더 교육 3) 리스크 평가 4) 사업지표 확인 5) 입찰문서를 포함한 계약 준비 지원 6) 재정관련 자문서비스 7) 기타 사업 준비 활동이며¹⁹⁾ 본사업의 10% 이내, 최대 1.5백만 달러까지 지원²⁰⁾
- 동시에 GCF 사무국은 PPF 승인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접적 기술지원 방식을 도입하였음.
 - 농업, 생태, 수자원, 토지,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국가지정기구와의 협의 후 직접접근 기구의 컨셉노트 작성과 PPF 제안서 작성을 지원
- 사업 준비금융의 승인 절차는 1) 국가지정기구와의 협의를 통한 제안서 개발 2) 이메일을 통한 제안서 제출(지지서한 첨부) 3) 사무국 평가 및 승인 총 3단계임.
- 2018년 5월까지 총 51개의 PPF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인 25개가 직접접근 기구의 제안서임.

■ [레디니스지원프로그램, RPSP] 수원국 주인의식 고양을 위한 주요 도구로서²¹⁾ 직접접근 기구의 파이프라인 단계 역량강화와 사업 이행능력 개선을 지원하며,²²⁾ 직접접근 이행기구에 기술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역량강화를 추진함.

19) GCF 홈페이지(<https://www.greenclimate.fund>, 검색일: 2018. 12. 12).

20) GCF(2015), Consideration of Funding Proposals, p. 2.

21) GCF Independent Evaluation Unit(2018), Independent Evaluation Of The Green Climate Fund's Readiness and Preparatory Support Programme.

22) GCF Independent Evaluation Unit(2018)의 레디니스지원프로그램 평가에 따르면 RPSP는 직접접근 기구의 역량강화 외에도 국가지정기구(NDA/FP)와 국가별프로그램 수립, 국가적응계획 수립 등을 지원함.

- 기승인 또는 승인을 희망하는 직접접근 기구들이 GCF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젠더 정책, 재무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역량강화
- 모로코, 세네갈, 나미비아, 아르헨티나, 남아공, 케냐, 페루의 직접접근 승인기구 7개를 대상으로 제도적 역량과 프로젝트 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이 이루어졌음.

■ [승인절차 간소화 시범사업, SAP] GCF 18차 이사회에서는 직접접근 기구의 소규모 사업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승인절차 간소화 시범사업(SAP: Simplified Approval Process Pilot Program)을 도입하기로 결정함.

- ①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고 ② 환경·사회 영향이 극히 적으며 ③ 요청예산이 1,000만 달러 미만인 활동에 대해 신청양식과 신청서 검토절차 간소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현재 나미비아 EIF와 몽골 XacBank 등의 사업이 SAP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음.

라. 시사점

■ GCF는 그간 타 기금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직접접근 방식을 전격 도입하였으나, 직접접근 방식에 의한 GCF 사업 규모는 여전히 크지 않음.

- GCF 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이행할 자격을 가진 이행기구 75개 중 절반 이상이 직접접근 이행기구지만,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승인사업의 다수는 국제접근 기구의 활동임.
- GCF 사무국은 직접접근 이행기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직접접근 이행기구의 GCF 참여 역량을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직접접근 승인기구는 사업을 개발하고 GCF와 소통하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제도적·인적·재정적 역량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출범 5년을 맞이하는 GCF의 성공적인 운영은 '기후변화'라는 공동의 도전과제를 마주한 국제사회의 책임인 동시에 사무국을 유치한 우리나라의 과제이기도 함.

- GCF의 가장 큰 특징인 직접접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준비금융(PPF), 레디니스지원프로그램(RPSP), 국가별 프로그램작성 등에 보다 많은 관심과 재원이 필요함.
- 더불어 복잡한 사업승인 절차에 많은 직접접근 이행기구가 어려움을 표현한바, 승인절차간소화시범사업(SAP)과 같이 사업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상당 수준의 경험을 축적했으므로, 그간의 경험을 활용하여 GCF의 승인을 받은 직접접근 이행기구의 사업개발 역량지원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고려 가능
-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세미나' 또는 GCF와 UNFCCC의 재정상설위원회 관련 포럼 등을 개최하여 국내

- 외의 기후변화 관련 부처·기관·기업을 대상으로 GCF 관련 정보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행사에서 직접접근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예컨대 직접접근 기구를 초청하여 지식정보 공유·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직접접근 기구의 지원수요를 파악하고 역량개발을 지원하며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안
 - 더불어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GCF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에 참여하게 된 바, GCF 유치시 강조하였던 선·개도국 간 가교역할에 집중하여 직접접근 방식 활성화를 위한 GCF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음. **KIEP**

참고문헌

- Amerasinghe, Niranjali., Joe Thwaites, Gaia Larsen, and Athena Ballesteros. 2016. *The Future of the Funds: Exploring the Architecture of Multilateral Climate Finance*. Washington, DC: World Resources Institute.
- Barnard, Sam, and Smita Nakhooda. 2014.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Finance: a Review of the Scaling-up Renewables Energy Program*. London, UK: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 CIF. 2018. *FY19 CIF Business Plan and Budget*.
- _____. 2011a. *Governance Framework for the Clean Technology Fund*.
- _____. 2011b. *Governance Framework for the Strategic Climate Fund*.
- _____. 2009. *Design Document for the Program on Scaling-up Renewable Energy*.
- Gulrajani, Nilima. 2016. *Bilateral versus multilateral aid channels: Strategic choices for donors*. London, UK: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 GCF. 2018. "Consideration of Accreditation Proposal." GCF/B.21/17.
- _____. 2018. "Consideration of Accreditation Proposals." GCF/B.20/13.
- _____. 2018. "Status of the GCF pipeline, including the status of Project Preparation Facility requests." GCF/B.21/Inf.11/Rev.01.
- _____. 2018. "Strategy to increase funding proposals from direct access entities." GCF/B.20/04.
- _____. 2017. "Facilitating an increase in proposals from direct access entities." GCF/B.16/Inf.08.
- _____. 2016. "Decisions of the Board – fourteenth meeting of the Board. 12-14 October 2016." GCF/B.14/17.
- _____. 2015. "Consideration of funding proposals." GCF/B.11/11.
- _____. 2014. "Guiding Framework and Procedures for Accrediting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Implementing Entities and Intermediaries, Including the Fund's Fiduciary Principles and Standards and 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 GCF/B.07/02.
- GCF Independent Evaluation Unit. 2018. *Independent Evaluation Of The Green Climate Fund's Readiness and Preparatory Support Programme*.
- GEF. 2014. *GEF-6 Programming Directions*.
- _____. 2010. *GEF-5 Focal Area Strategies*.
- _____. 2007. *Focal Area Strategies and Strategic Programming for GEF-4*.
- Trujillo, Nella Canales and Smita Nakhooda. 2013.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finance: a review of the Adaptation Fund." ODI Working Paper 373. London, UK: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 UNFCCC. 2017.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twenty-second session, held in Marrakech from 7 to 18 November 2016." FCCC/CP/2016/10/Add.1.
- _____. 2010. "Cancun Agreement. Decision 1/CP.16." FCCC/CP/2010/7/Add.1.
- _____. 2001. "Funding under the Kyoto Protocol. Decision 10/CP.7." FCCC/CP/2001/13/Add.1.

[기타 자료]

Adaptation Fund 홈페이지. <https://www.adaptation-fund.org/apply-funding/implementing-entities/>(검색일: 2018. 11. 6).

Climate Funds Update 데이터베이스. <https://climatefundsupdate.org/data-dashboard/>(검색일: 2018. 10. 26).
Global Environment Facility 홈페이지. <https://www.thegef.org/partners/gef-agencies/>(검색일: 2018. 11. 6).
Green Climate Fund 홈페이지. <https://www.greenclimate.fund/>(검색일: 2018. 10. 15~2018. 12. 12).